

목록

맹꽁이 건설기계 등록증(앞)..... 1
맹꽁이 건설기계 등록증 (뒤)..... 2

건설기계 등록증
 검사증

발급번호 : 2903-20141023-006246

최소등록일 : 2006-01-05

건설기계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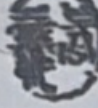
구 등록번호: 네707-6014

등록사항

건설기계명	가중기	등록번호	광주07타5425
형식	MR100(KR-101D)	규격	10톤
원동기 및 형식	WD 4C-T	차대일련번호	KR100-1479
사용본거지 (상호 및 사용본거지)	한일전기(주)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450번길 4-1(농성동)		

소유자의 표시

성명(법인명)	이원	주민등록번호	700301-1541015
주소	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비대로132번길 22 202동 602호(수완동, 수완2차 우미원아파트)		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 및 검사료 하영음을 증명합니다.
 사유: 이전 2014년 10월 23일

광주광역시 서구청



1. 주요 제원

형식승인번호 : 2-07-0259-00-33

길이	5500 mm	너비	1955 mm
높이	2730 mm	중량	12285 kg
구동방식	완구식 (하이브리드)	정격출력	100/3000 rpm
기동수	기동	연료종류	경유

2. 제당권 등록사실

• 그 밖의 제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 (5)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. 작업장치

기동장치 표시

최고속도(90km/h) 제동장치	설치 ()
대형건설기계 표시	설치 ()

※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적기등 반야 운행하거나,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문체 부 이상하여야 합니다.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정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건설기계의 등록주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정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



광주광역시 서구청장

4. 건설기계검사관				광주07D5426	5. 등록사항 변경관			
구분	검사일	유도기관 (과제)	검사기관	담당자성명	인인	변경일자	변경사항	비고
신규등록 - 2006-01-05								
정기검사	2011-01-14	2012-01-04	한진건설원경기등록소	유원근				
정기검사	2012-01-13	2013-01-04	한진건설원경기등록소	조미경				
정기검사	2013-01-18	2014-01-04	한진건설원경기등록소	김민서				
정기검사	2014-01-17	2015-01-04	한진건설원경기등록소	김민서				
정기검사	2016.1.14	2016.1.4	광주건설부	김민서				
정기검사	2016.1.11	2017.1.4	광주건설부	김민서				
정기검사	2017.1.9	2018.1.4	광주건설부	김민서				
"	2018.1.8	2019.1.4	광주건설기계검사소	김민서				
"	2019.1.14	2020.1.04	"	김민서				
정기	2020.1.10	2021.1.04	"	박재현				
정기	2021.1.15	2022.1.04	광주	김민서				
정기	2022.01.17	2023.01.04	광주	박재현				
- 추가사항 - 목재판: 선량등록번호 기재합니다.								
정기	2024.1.16	2024.01.04	광주	김민서				